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셜제도공화국, 자메이카, 룩셈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조지아, 시에라리온공화국 및 잠비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고, 니우에와의 외교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니우에를 관할하도록 지정하며,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나우루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및 라이베리아공화국을 관할하는 대사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9명, 9등급 2명, 8등급 6명, 5등급 또는 6등급 9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및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정원 2명(8등급 2명)은 종전의 정원 2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9등급 2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8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및 주재관 정원 2명(5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9.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1호 중 “뉴질랜드·마셜제도”를 “뉴질랜드·니우에·마셜제도”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944”를 “9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0”을 “228”로 하며, 운전서기보 “21”을 “2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2”를 “41”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6”을 “700”으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6”을 “114”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0”을 “158”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17”을 “11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46”을 “938”로 하고, 일반직 계 “230”을 “228”로 하며, 운전서기보 “21”을 “2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2”를 “41”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8”을 “702”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6”을 “114”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0”을 “158”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17”을 “115”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108”을 “107”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2”로 하며, 행정서기 “6”을 “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08”을 “107”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2”로 하며, 행정서기 “6”을 “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49”를 “1,483”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49”를 “1,48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22”를 “231”로, 8등급 외무공무원 “165”를 “176”으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2”를 “274”로,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를 “24”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5”를 “36”으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52”를 “251”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5”를 “41”로,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를 “2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 ⑥ (생 략) ⑦ 아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나우루 · 네팔 · <u>뉴질랜드</u> · 마 <u>셜제도</u> · 마이크로네시아연방 · 몰디브 · 바누아투 · 방글라 데시 · 부탄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 탄 · 인도 · 쿡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 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3. (생 략) ⑧ (생 략)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u>뉴질랜드</u> · <u>니</u> <u>우에</u> · <u>마셜제도</u> ----- ----- ----- ----- ----- ----- ----- ----- ----- ----- ----- 2.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944</u>	<u>936</u>	-8
·	·	·	
·	·	·	
일반직 계	<u>230</u>	<u>228</u>	-2
·	·	·	
·	·	·	
운전서기보	<u>21</u>	<u>2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2</u>	<u>41</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6</u>	<u>700</u>	-6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 직공무원	<u>116</u>	<u>114</u>	-2
·	·	·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 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60</u>	<u>158</u>	-2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 무원	<u>117</u>	<u>115</u>	-2
·	·	·	
·	·	·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6</u>	<u>938</u>	-8
•	•	•	
•	•	•	
일반직 계	<u>230</u>	<u>228</u>	-2
•	•	•	
•	•	•	
운전서기보	<u>21</u>	<u>2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2</u>	<u>41</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8</u>	<u>702</u>	-6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 직공무원	<u>116</u>	<u>114</u>	-2
•	•	•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 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60</u>	<u>158</u>	-2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 무원	<u>117</u>	<u>115</u>	-2
·	·	·	
·	·	·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8</u>	<u>107</u>	-1
·	·	·	
·	·	·	
일반직 계	<u>43</u>	<u>42</u>	-1
·	·	·	
·	·	·	
행정서기	<u>6</u>	<u>5</u>	-1
·	·	·	
·	·	·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8</u>	<u>107</u>	-1
•	•	•	
•	•	•	
일반직 계	<u>43</u>	<u>42</u>	-1
•	•	•	
•	•	•	
행정서기	<u>6</u>	<u>5</u>	-1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49</u>	<u>1,483</u>	+34
외무공무원 계	<u>1,449</u>	<u>1,483</u>	+34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 공무원	<u>222</u>	<u>231</u>	+9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165</u>	<u>176</u>	+11
·	·	·	
·	·	·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 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272</u>	<u>274</u>	+2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 원	<u>19</u>	<u>24</u>	+5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 기술직공무원	<u>35</u>	<u>36</u>	+1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 무원	<u>252</u>	<u>251</u>	-1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35</u>	<u>41</u>	+6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 기술직공무원	<u>19</u>	<u>20</u>	+1